

1. 개정이유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 20905호, 2025. 4. 8. 공포,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관련 조항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여권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398호, 2025. 3. 25. 공포·시행)으로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하고,

지난 개정 당시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관련 조항에서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 동의 생략 관련 규정 신설 및 정비

- 1) 법정대리인 동의 불가 사유별 제출서류 명시(제4조)
- 2) 여권 대리 신청 등이 가능한 사람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를 추가 규정(제5조, 제6조, 제11조)
- 3) ‘보호자 동의서’ 서식 제정(별지서식 제1호의3) 및 기존 서식 번호 수정(별지서식 제1호의4)
- 4)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상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문구 수정(별지서식 제1호)

나.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관련 후속조치

- 1)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상 병역관계 서류 확인 관련 문구 삭제(별지서식 제1호)

다. 기타 미비점 보완

- 1)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관련, 대리인 연령 요건 정정 및 누락된 제출서류 복구(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3.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④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호자 동의서

3.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에 대한 신고접수증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법정대리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제4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서 또는 결정서 사본 등 법정대리인의 친권 상실·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영 제4조의2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발급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제5조 중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청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이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

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제3호가목은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호자

제6조제3항제2호나목 중 “증명서”를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서·결정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6조제3항제3호가목 본문 중 “법정대리인”을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법정대리인이”를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명서”를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서·결정서”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생략) ② 삭제 <u><신설></u>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u>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u>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u> 3. <u>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u> ⑤ ----- ---- <u>제1항, 제3항 및 제4항</u> ---- -----
③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u>제1항</u> 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신 설>

-----.

④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호자 동의서
3.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4조의2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 가출 또는 행방
불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증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
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4조의2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또
는 시체검안서 등 법정대
리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제4조의2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심판서 또는 결
정서 사본 등 법정대리인
의 친권 상실·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영 제4조의2제4호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
리인 동의 없이 여권을 발
급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삭 제>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2호 본문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⑦ (생략)

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의 동일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

⑥ -----

-- 별지 제1호의4서식-----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

----- 신청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이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1. 2. (생 략)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생 략)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인의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람(제3호가목은 제외한다)으로서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보호자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신 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다만, 법정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단서 신설>

④ (생략)

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① (생략)

② 18세 미만인 사람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

가정법원의 판결서·결정서

다.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3. -----

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

-----.

나. -----

-----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서·결정서. 다만,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u>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